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2018.3.16.)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별표 4)
 -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월 500,000원 지급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최근 들어 가축법정전염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제2종과 제3종인 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이러한 전염병이 단순히 농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또한 전국의 각종 행사, 축제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과로사로 순직하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현장근무를 회피하여 직원 충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라.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마.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에 위임조례 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을 정함(안 제2조~제5조)
- 다. 고충민원의 대상 및 제외를 정함(안 제6조)
 -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충사항이 대상
- 라. 세무조사의 연기,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세무조사 연기신청의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마. 권리보호요청 대상, 처리의 기본원칙, 고충민원과의 구분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를 정함(안 제12조)
- 사.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를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권리보호 요청, 세무담당부서와 독립 등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로써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군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 (현행)201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2018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 나. 위임법령의 범위에서 감면기간 조정함(안 제5조·제7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5년 ⇒ 3년으로 변경함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다.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안 제8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추가(안 제10조)

마.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11조~14조, 제16조~제18조)

○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감면기한의 특례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제180조, 제183조·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26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조례 개정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었거나 재기재한 사항과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면율 조정, 전자송달 방식 납부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추가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시행 '18.1.1.)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함(안 제14조)
 - 부과기준세액: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상위 법령에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2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됨

- 나. 우리군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조례 제명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재기재하여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규정 정비함(안 제1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의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함(안 제2조)
 - 근거법령을 인용하고,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함.
- 다. 법령 재기재사항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비함(안 제3조)
 - 법령에 없는 부위원장 선출방법 규정: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위원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바로잡음(안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대행
⇒ 위원이 대행

마.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함(안 제5조의2)

바. 수당규정 삭제함(안 제10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에 재기재하여 위배소지가 있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시설 내 매점 면적제한 규정 삭제함(안 제3조 단서)
 - 매점 면적제한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 나. 계약기간 3년 규정 삭제함(안 제6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배
- 다. 계약자의 의무 규정 삭제함(안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행 관리 규정 삭제

라. 계약의 해지 규정 삭제함(안 제8조)

- 법령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외에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례에 재기재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이라는 의미인 “계층”이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계층간 위화감 등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순화함(안 제명, 제1조~제3조)

- 저소득계층 ⇒ 저소득주민

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조례에서 한 번만 나오는 용어는 정의에서 삭제하고 제3조 지원대상에서 직접 규정함
- 보험료,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정비

다. 보험료 지원대상 정비함(안 제3조)

- 정비: 한부모세대 ⇒ 한부모가족
- 실효성 없어 삭제: 소년소녀가장세대

라.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지원 예산확보 규정 삭제함(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 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용어의 순화로 위화감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조례로 위임된 위임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아이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
 -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문장 등을 수정함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용어에 대한 정확한 법령명칭을 명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하고,
- 나.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여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재기재·위배,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구 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제19조)
-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발전 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사기진작, 실비지급
-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보험가입 규정을 법령 취지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재개정하고 현시점에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조례 전반, 안 제29조)
 - 성평등 ⇒ 양성평등
 - 여성주간 ⇒ 양성평등주간
- 나. 법령위배 및 개별조례 제정·시행 중인 사항 등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7조~제13조, 제25조, 제31조, 제37조~제39조)
 - 정의규정 삭제: 성평등, 성차별
 - 군수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의무 삭제: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지사의 의무로 규정

- 성평등정책위원회 규정 삭제: 구성·운영 실적 전무, 실효성 없음
-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규정 삭제: 「거창군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5.3.25. 제정 시행 중) 규정사항
- 성평등기금 삭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7.9.27. 제정 시행 중)
- 그 밖에 실효성 없는 규정 삭제
 -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양성평등계정에서 지원
 - 사무의 위탁, 수당 규정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위배 및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8. 3. 15.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①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가. 제안이유

- 용도폐지된 국도37호선의 활용방안 마련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화를 위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취득 개요

- 위 치: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22-16번지 일원
- 면 적: 92,909m²(토지소유자: 강** 외 1명)
- 사업기간: 2018. 1. ~ 2019. 12.
- 사 업 비: 600백만원(군비 600)
- 주요기능: 자연휴양림(308,056m²)

다.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6필지		92,909	20,525			
취득	토지	고제면 개명리 산22-16	임	1,061	268	2018	백두대간 거창자연 휴양림 조성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23	임	6,218	1,461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35	임	38,609	9,228			강**
		고제면 개명리 산23-1	임	11,914	2,287			박**
		고제면 개명리 산23-9	임	24,198	4,259			박**
		고제면 개명리 산23-11	임	10,909	3,022			박**

라. 위치도 및 조감도



②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휴양관 및 화장실 건립)

가. 제안이유

- 백두대간 폐도(국도 37호선) 주변 생태복원과 체험단지 내 시행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등과 연계 체험·체류·레저가 가능한 덕유산권 핵심관광 타운화를 위해 휴양관 및 화장실을 건립 하고자 함.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4번지 일원
- 건축규모: 864.1m²
 - 산림휴양관 1동,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1동
 - 주차장 안내소 및 화장실 1동
- 사업기간: 2018. 3. ~ 2019. 12.
- 사 업 비: 9,900백만원(국비 4,950, 도비 1,485, 군비 3,465)
- 주요기능: 향노화휴양체험지구 내 산림휴양관 및 화장실

다.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위치	취득내역	면적	기준가격(사업비)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계				864.1	2,660,000			
취득	건물	고제면 개명리 2054번지 일원	산림휴양관 지하 1층, 지상 3층	682	2,480,000	2019	향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관련시설 건립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지상1층	114.5				
			주차장 안내소 및 화장실 지상 1층	67.6	180,000			

라. 위치도 및 조감도



③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가. 제안이유

- 거열산성 군립공원의 자연생태계·문화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함.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48번지 외 1필지
- 면 적: 1,428m²
- 사 업 비: 200백만원(군비 200)
- 소 유 자: 강**

다.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1,428	17,669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1048	전	1,052	14,202	2018	위장및카사 취합 취합 주조 별출 계	강**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1048-1	전	376	3,467				

라.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건립

가. 제안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17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농·특산물 판매와 친환경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8-1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2017. 1. ~ 2019. 12.(3년)
- 사 업 비: 2,200백만원(기금 2,200)
- 건축규모: 500m²
- 사업내용: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신축

다.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위 치	취득내역	연면적				
취득	건물	거창읍 가지리 188-1, 188-2, 187	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 (지상 3층)	500	1,400,000	2019	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 건립	

※ 2017.11.13. 제22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거창읍 가지리 188-1 외 2필지(1,451m²) 취득(290,416천원)

라.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전문위원 검토요지

①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이 백두대간권 사업에 필요하다면 매입이 당연하다 여겨지나, 혹 백두대간 사업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적정가격 형성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②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휴양관 및 화장실 건립)

-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백두대간권 사업과 연계로 부대시설인 휴양관과 화장실 건립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사업 성격에 조화가 되도록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③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원 내 사유지의 장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토지 취득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④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건립

- 제22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때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안건은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주변 환경이나 교통소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된 바 있음

- 이번 환경교육센터 건립도 위치, 방향 그리고 면적 등 활용성이 있도록 건립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해당없음
-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